입법동향 – 2025년 제4호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일 잘 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차 례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 7
2. 「전라남도 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 ····· 10
3.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 ····· 13
4. 「울산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6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1. 「노후거점산단법(약칭)」 일부개정 ····· 21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9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프랑스의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노동 보호」 입법례 ····· 41
2. 「오스트리아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입법례 ····· 49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 「공공정책 정보」(메일링 서비스) ····· 59

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

1. 교육감의 교복지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 가능하도록 조례 규정 가능 여부 ····· 65
2. 출자기관 등의 재산 매입·매각 시 지방의회 동의 받도록 조례 규정 가능 여부 ····· 67

Ⅵ. 법령 해석 사례

1. 지방재정영향평가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주체 ····· 73
2.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변경 시 계속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 79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4. 3., 전라남도조례 제6235호, 2025. 4. 3., 제정】

□ 상임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 최근 증가하는 주취자 문제로 인해 안전과 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주취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연계와 보호를 강화**하여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및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에 대해 규정함(제4조~제5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3곳(부산, 서울, 전남)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약 1만* 건의 주취자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주취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끊임없는 주취자 신고에 낭비되는 경찰력… 3년간 32,640건(2024. 12. 28. 전북도민일보)

○ 현재, **우리 도**에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1개소**(원광대) 설치되어 운영(2021년 125건, 2022년 2018건, 2023년 304건)되고 있으나, **응급의료 대상이 아닌 주취자는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주취자 인계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경찰의 치안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경찰력 본연의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우리 지역 **생활주변폭력사범의 50%이상**이 주취 범죄로(2023년 기준) **주취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주취자 관리에 소요되는 경찰력 부담을 줄여 더 많은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4. 3., 전라남도조례 제6235호, 2025. 4. 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취자의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질서 유지와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등으로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해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2.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3.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라남도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

2. 주취자 인수 및 보호·관리

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

4. 가족·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소방본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2025.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정】 전라남도 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

【시행 2025. 3. 6., 전라남도조례 제6212호, 2025. 3. 6., 제정】

□ 상임위원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제정이유

◇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저탄소 축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제4조).
다.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상담 대해 규정함(제5조～제7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2곳(경기, 전남)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2024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도내 가축(소, 돼지, 닭, 오리) 사육 두수는 35,830,574마리로 **전국의 약 17%**에 해당하고, 가축사육 농가수는 10,737호에 달하는 등 **전국에서 전북의 축산업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출처 : 통계청-가축동향조사)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2월,「**축산분야 온실가스 2030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였고, 우리 도 역시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저탄소·친환경 축산업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저탄소 축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세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라남도 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

【시행 2025. 3. 6., 전라남도조례 제6212호, 2025. 3. 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축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저탄소 축산업”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가축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3. “탄소중립 사회”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시장·군수,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저탄소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저탄소 축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라남도 환경친화축산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온실가스 감축 방안
3. 지원 사업
4.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5. 그 밖에 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자재 개발 및 보급
2. 환경친화사료 공급
3. 온실가스 저감 자재 및 설비 확충
4. 가축분뇨 이용 촉진
5. 그 밖에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상담**)

① 도지사는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나 관련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상담을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2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

【시행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931호, 2025. 3. 19., 제정】

□ 상임위원회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제정이유

◇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해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차난을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4조).

나. 주차공유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다. 주차공유 추진사업, 사업비 지원, 정보의 공개 등을 규정함(제6조～제8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6곳(대구,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제주)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2025년 3월 기준 우리 도에 등록된 차량은 1,005,140대*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이상적인 주차장 보급률**은 **300%**이지만 현재 도내 도심지역의 주차장 보급률은 **전주시 131%, 익산시 142.8%, 군산시 175%****로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있음.

* 국토교통 통계누리

** 전북 등록 차량 100만대…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2024. 12. 23. 전북일보)

○ 타 지자체에서는 **주차공유 플랫폼을 운영**하여 **비어있는 시간대의 주차장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함으로써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해나가고 있음.

※ 공유주자창 신청자에게는 주차시설 보수비, 주차장 운영보조금 등 지원

○ 우리 도 역시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

【시행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931호, 2025. 3. 1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유”란** 주차장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주차공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주차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주차공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차공유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주차공유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4. 주차공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도내 주차공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추진사업**)

① 도지사는 주차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의 구축·운영
2. 주차공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3.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주차공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구축하는 주차공유 플랫폼이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주차공유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8조(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주차공유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제정] 울산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4. 3., 울산광역시조례 제3078호, 2025. 4. 3., 제정】

□ 상임위원회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제정이유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제4조～제5조).
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7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4곳(경기, 서울, 울산, 충남)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2024년 9월 기준 전국 전통사찰 수는 983개소로, 이 중 **우리 도의 전통사찰 수는** 전체 **12%**인 **119개소**임.(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현황 2024. 9. 9.)

○ **전통사찰**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가치는 물론, 자연환경적·문화예술적 가치가 있어 잘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만큼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상황**임.

* 전통사찰 훼손되는데 예산은 "찔끔", KBS 뉴스 2025. 4. 3. / 전북 사찰 안전조사 강화해야, 새전북신문 2024. 6. 12.

○ 이에 따라, **전통사찰과 그 속에 깃든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고** 오래도록 **보존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울산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4. 3., 울산광역시조례 제3078호, 2025. 4. 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국가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관계 전문가가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3.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일부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타법개정】

□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요건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현 행	제 정
<신 설>	제28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융자 중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융자의 신청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조례」

○ **노후거점산업단지**란 착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 인프라와 정주여건 악화로 혁신역량이 저하되고 산업단지 생산성도 저해되고 있는 산업단지를 말하며, 이러한 산업단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도내 노후산단수(개) : ('00) 3 → ('10) 24 → ('15) 37 → ('25) 48 → ('30) 63[예상]

○ 우리 도는 지난 3월 26일 전주 제1일반산업단지를 디지털과 친환경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전북전주 스마트 그린산단사업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6개 핵심 사업에 총 888억 원(국비 61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노후산업단지의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기관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다양한 사업 진행에는 한계가 있음.

【2025년 추진계획】 4개 사업 60억 원 우선 추진

▲통합관제센터 구축(15억 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22억 원),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11억 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22억 원)

○ 이번 상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고, 융자의 조건, 기간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를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혁신거점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 진흥”이란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국가와 지역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의 사업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5.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기업 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산업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8.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혁신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의 혁신역량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전략 수립
2. 거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기능 집적화
3. 연계 산업단지·대학·지역 등과 연계한 효율적 재원 배분
4. 산업지원, 주거, 문화, 복지, 교통물류 및 규제개혁
5. 그 밖에 지역혁신 거점산업단지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사업) 산업단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도 산업단지 중심 혁신계획 수립
2. 기업 중심의 투자확대 유도
3. 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 보수, 개량 및 확충 사업
4. 입주업종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 사업
5. 산업단지와 군집화된 개별입지의 산업집적활성화 사업
6. 기업·연구소·대학 등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7. 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사업

8.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9.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의시설 등의 개량·확충사업
10. 산업단지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11. 문화콘텐츠 개발·확산·홍보행사 개최 지원사업
12. 교육, 자문, 공동판매 및 간담회 개최 등 입주기업체 및 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13.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혁신 거점산업단지의 지정) 도지사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의해 구성된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지역혁신을 위한 거점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노후산업단지 정비지역 지정) 도지사는 노후산업단지 민간투자 촉진 및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후산업단지 정비지역 지정 및 공고를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① 도지사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노

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주요 시책
2.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3.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경제, 산업단지 또는 지역고용 활성화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 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관련 교수 및 전문가

4.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와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구조고도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제척·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 또는 사업을 하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에는 그렇지 않다.

제18조(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제6조의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 【일부개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타법개정】

□ 개정이유

◇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치입법권 및 시·도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범위와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 2023년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2022년 약 1130만명 대비 약 36% 증가된 약 1536만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이처럼 최근 한옥건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옥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2024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4곳(대한건축사 협회, 명지대, 전남대, 전북대)에 불과함. ※ 우리 도 자체 지정기관: 없음

○ 상위법령 **개정 전**에는 시·도지사가 한옥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 바, 한옥의 대중적 수요를 충족·확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3. 7.,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699호, 2025.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여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한옥 및 건축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역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우수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건축자산을 말한다.
3.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4.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한옥의 소유자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주를 말한다.

제4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①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기초조사 결과보고서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영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3. 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인·목수 등 지역한옥산업 관련 사업자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등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적용계획서)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2. 법 제14조에 따른 특례적용 및 미적용인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의 매입 등) 도지사는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및 건축자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수건축자산으로 인정되는 건축자산에 한정한다)을 매수하여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시민단체
3. 한옥·도시계획·건축·역사 등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
4. 업무 관련 공무원
5. 도의회 의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간사위원 1명을 협의체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 도지사는 협의체가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축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개축·재축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4.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등록한옥과 시장·군수가 지정·공고한 한옥마을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미 비용을 지원한 동일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비용을 지원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우: 20년
2.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5년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5조 및 영 제18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 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옥의 보존기간 등의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지원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5조제4항의 기간 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해당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지원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지원액을 사용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한옥의 등록)

① 한옥의 소유자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원받은 자는 한옥 신축 등의 완료신고 후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원받은 경우에 한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2020.5.29.>

제18조(등록한옥대장) 도지사는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등록한옥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건축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19조(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사업) 도지사는 한옥건축양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등의 실내외 공간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조성하는 사업
2. 한옥이 아닌 건축물을 한옥건축양식으로 적용하여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신축하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건축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대하여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호 및 관리하는 사업
3.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도지사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자산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①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존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건축자산 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한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현장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현장형 한옥 개·보수 상담, 점검 보수, 다양한 교육, 기술연구, 한옥박람회 등 산업화 추진 등을 통한 현장에서의 한옥지원 거점 역할을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시장·군수, 한옥장인·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5. 3. 7. 조례 5699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프랑스의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노동 보호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5-4호(통권 제267호), 강명원】

◇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활성화로 **아동 '숏폼'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통해 유명해지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대표적인 **전 세계 소셜 미디어 유튜브 랭크(Youtube-rank.com)에 등록된 상위 유튜브 9,236개 중 831개(9%)가 아동 주연 유튜브**이며, 이중 국내 아동 주연 유튜브도 포함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아동복지법」 등을 통해 아동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의 학습권, 휴식권과 정신 건강 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 영상 등에 주연으로 출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아동의 보호 즉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노동 보호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거나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고용주가 아닌 **부모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해 촬영·제작**되는 영상에 **주연으로 출연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더 소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 **프랑스는 2020년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2020년 10월 19일 제2020-1266호 법률」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영상 등에 주연으로 출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보장과 고용주·부모·보호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은 차후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 마련 시 참고**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주제어	디지털 환경, 아동 노동 보호, 잊힐 권리, 온라인 플랫폼 책임

□ 도입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난감 리뷰, 게임, 브이로그 등 **아동이 주인공으로 출연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디지털 마케팅 에이 전시인 AJ Marketing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의 상위 아동 주연 콘텐츠 계정으로는 보람튜브, 서은일상이야기, 슈슈토이 등**이 있다.

❍ **문제는** 아동 콘텐츠를 촬영·제작하는 **일부 고용주·부모·보호자 등이 수익금 증대를 위해 아동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영상을 제작하고, 이 과정에서 **아동의 학습권과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기존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으로는 **이들을 규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노동을 보호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2021년 정청래 의원 등 10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개념에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포함, ▲부모·친권자·후견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 촬영 시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 기준 초과 시 아동이 16세에 달하기 전까지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에 의한 수익금 인출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제21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 **2020년 프랑스는** 온라인 플랫폼 영상에 주연으로 출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16세 미만 아동의 학습권, 휴식권, 정신 건강, 재산권 및 잊힐 권리 등을 보장**하고, 고용주·부모·보호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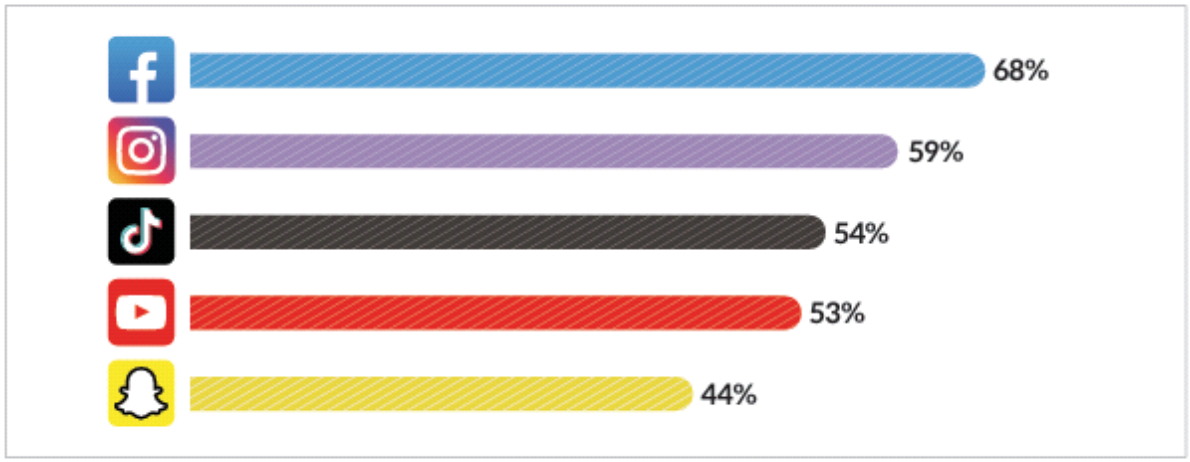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2020년 10월 19일 제2020-1266호 법률, 이하 16세 미만 아동의 상업적 이미지 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아동의 현황

❍ 프랑스 육아 및 디지털 교육 연구소(Observatoire de la parentalité et de l'éducation numérique)에 의하면 **2022년 기준, 프랑스에는 약 15만 명의 16세 미만 아동(이 중 3,875명이 수익 창출)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령은 대부분 3세에서 15세 사이이며, 이들의 온라인 계정은 부모가 74%, 교사 12%, 유아교육 전문가 8%, 의료인이 6%를 소유하고 있다.

❍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15만 명의 16세 미만 아동들은 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스냅챗 등에서 활동하면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및 비율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프랑스 16세 미만 아동의 주요 소셜 네트워크 사용 비율**



출처: 프랑스 온라인 매거진 플랫폼 (https://e-writers.fr/)

❍ **프랑스는 16세 미만의 아동 주연 콘텐츠 계**정을 구독자 수에 따라 1천 명 미만의 나노(Nano, 20%), 1천 명에서 1만 명 사이의 마이크로(Micro,

55%), 1만 명에서 3만 명 사이의 매크로(Macro, 19%), 3만 명에서 5만 명 사이의 메가(Mega, 3%), 5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의 울트라(Ultra, 3%)로 나누고 있다. 주요 콘텐츠 분야는 장난감 리뷰, 테마파크 방문, 패스트푸드 시식, 선물 개봉(언박싱), 챌린지 영상 등으로 **이들 중 70% 이상은 매월 5천 유로(한화 약 79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 16세 미만 아동의 상업적 이미지 보호법

1. 아동의 노동허가제 도입

❍ 「16세 미만 아동의 상업적 이미지 보호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2022년 4월 28일 제2022 727호 법규명령」은** 노동으로 간주되거나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수익이 발생되는 영상 콘텐츠에 주연으로 출연 중인 아동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의 콘텐츠 계정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이하 부모 등)에게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노동 허가 신청, 허가 및 정지 등 규정

- **부모 등**이 영상 촬영 지역의 관할 **도지사에게 노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부 산하 **경제·고용·노동·연대부서장의 검토, 심사위원회(총 5인으로 구성)의 심사 후 관할 도지사가 허가**한다.
- 특히, **심사위원회는** 아동이 맡을 역할의 윤리성, 난이도, 아동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모든 콘텐츠 분야(모델, 비디오 게임 등)의 윤리적 기준, 아동 연령에 맞는 활동 강도(야간 활동이나 과도한 촬영 일정 금지) 등을 검토·심사**한다.
- 활동 **허가 신청 서류**는 ① 부모 등의 출생증명서, ② 아동 대상 의료 검진 증명서(소아과 의사나 일반의가 검사를 수행), ③ 아동 신원증명서, ④ 아동이 전에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 중인 활동 목록, ⑤ 출연 콘텐츠의 윤리적 기준 및 난이도 평가서, ⑥ 수익, 학업 병행에 대한 방안 등이 있다.
- 부모 등이 학습권, 휴식권 등 **아동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개월 동안 활동이 정지**되며,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부모 등이 조치를 이행한 경우 또는 정지기간 동안 부모 등이 이의를 제기한 후 1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지는 해제된다.

2. 아동의 노동 보호 강화

(1) 아동의 권리 보호

❍ **아동이 주요 출연자로 등장하는 영상** 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제작·배포하는 경우 노동으로 간주**된다. 즉,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 활동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상업적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이라면 해당 아동의 활동은 모델, 공연, 광고 등과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로 간주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 **부모 등은 아동이 주연으로 출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노동으로 간주되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거나 게시하기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부모 등은 아동의 권리(학습권, 휴식권 등)와 이들의 영상, 사진 등이 **온라인에 노출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영향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아동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영상 콘텐츠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학습권, 휴식권 등의 아동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부모 등은 노동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부모 등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도지사는 이들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특히, **도지사는 부모 등**에게 노동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상 제작 총 시간, 제작 지속 시간, 위생 및 안전 조건, 영상 배포와 관련된 심리적 위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위험, 학습권 등과 관련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수익금 관리 보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이 창출한 **수익의 일부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국가 예치금 기관(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수익금**은 아동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년(18세)이 되거나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독립(세대 분리)할 때까지 관리**된다.

❍ 만약 **아동이 창출한 수익**을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보유할 경우 처벌**된다. 다만, **도지사는** 아동이 창출한

수익 중 일정 부분을 부모 또는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아동이 사고로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부모 또는 보호자는 **예외적으로 도지사의 승인 없이 일부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 **프랑스의 시청각 및 디지털통신 규제기관**(Autorité de regulation de la communications audiovisuelle et numérique, ARCOM)은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아동 이미지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을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이 자신의 영상, 사진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 또는 게시될 경우 자신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법적 위험성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동 이미지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주요 내용

- 온라인 플랫폼은 모든 이용자가 아동의 이미지 확산과 관련된 권리, 위험,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 온라인 플랫폼은 아동이 모욕당하거나, 조작되거나, 위험에 처한 오디오·비주얼 콘텐츠를 식별하고 신고하도록 장려하여 아동을 보호한다.
- 온라인 플랫폼은 아동이 지나치게 맞춤화된 상업적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과도한 광고로 인해 아동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지한다.
- 온라인 플랫폼은 개인정보 삭제 권리의 실효적 이행을 용이하게 한다.
- 온라인 플랫폼은 아동 이미지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프랑스의 **시청각 및 디지털통신 규제기관**(ARCOM)은 윤리 강령의 이행 및 효과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평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4) 아동의 '잊힐 권리' 보장

❍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영상, 사진 등)를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보장**받는다. 아동이 '잊힐 권리'를 행사하면 온라인 플랫폼 책임자는 해당 영상을 삭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모 등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은 아동이 자신의 영상, 사진 등의 삭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해당 권리와 행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4) 위반 시 처벌

❍ 「16세 미만 아동의 상업적 이미지 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학습권, 휴식권, 정신 건강, 재산권, 잊힐 권리 등을 **부모 등과 온라인 플랫폼 책임자가 위반할 경우 최대 7만 5천 유로(한화 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 요약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을 통해 아동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의 학습권, 휴식권, 정신 건강 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들은 온라인 플랫폼 영상 콘텐츠에 주연으로 출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아동 보호에 미온적이거나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고용주가 아닌 부모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해 촬영·제작되는 영상에 주연으로 출연하는 아동의 보호에 대해서는 더 소극적이다.

❍ 프랑스는 2020년 「16세 미만 아동의 상업적 이미지 보호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영상에 주연으로 출연 중인 1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아동의 노동 보호를 위해 노동으로 간주되거나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수익 발생이 되는 콘텐츠 계정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고용주, 부모, 보호자, 후견인 등)에게 도지사의 노동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습권, 휴식권, 정신 건강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부모와

세대 분리를 할 때까지 수익금을 국가 예치금 기관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 미디어 규제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시청각 및 디지털통신 규제기관**(ARCOM) 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아동 이미지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윤리 강령 이행 평가 보고서를 작성·발표** 하고 있다.

❍ 특히, **아동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고용주, 부모, 보호자,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 온라인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랑스의 입법례는 **우리나라가 차후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노동 보호 입법 마련 시 참고가 될 수 있다**.

추천 자료

-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Data&Law 2024-12호
- 아동 이미지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Charte visant à promouvoir l'information et la protection des utilisateurs s'agissant de la diffusion de l'image des mineurs sur les plateformes en ligne)
- 이은주, 연소근로자 보호 법제 개선방안 논의 – 프랑스 법제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2024

2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4-7호, 통권 제245호, 안성경】

◇ 우리나라에서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으로 정의**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호). 이러한 영업을 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최근 동물위탁관리시설에서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도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034개이며, 이 중 영업중인 업체는 5,496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위탁시설의 규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일반법인 **「민법전(ABGB)」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특별법인 「동물보호법(TschG)」에 의해 보호**한다. 이 법은 동물위탁관리시설(Tierpension)을 “지불 또는 기타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동물을 양육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제4조 제9a항). **오스트리아는** 등록보다 강화된 **허가제로 동물위탁관리시설을 운영**하며, 허가를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우리보다 강하게 규율**하고 있다.

◇ 이처럼 오스트리아는 동물의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위탁관리 등에 대해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적절한 사육관리와 반려동물의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련 법제 정비에 참고하고자 한다.

관련 법률	「민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주제어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보호, 동물권, 환경윤리, 사육, 반려동물, 허가, 등록

□ 도입

❍ 9개의 주로 구성된 오스트리아는 **2013년 연방헌법에 동물보호를 연방의 업무로 규정**하였다. 또한 **세계 최초로** 1988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Tiere sind keine Sachen)"라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민법전(ABGB)」 제285a조에 규율**하였다.

❍ 오스트리아에서는 상업활동의 일환으로 **동물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2004년 제정된 「동물보호법 (TSchG)」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동물보호특별시행령(TSch-SV)」에서 동물위탁관리업자의 상세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주요입법

1. 「연방헌법(Bundes-Verfassungsgesetz)」 제11조

❍ 세계적으로 **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한 국가**는 스위스(1973년), 인도(1976년), 브라질(1988년), 슬로베니아(1991년), 독일(2002년), 룩셈부르크(2007년), 오스트리아(2013년), 이집트(2014년) 등으로 많지 않다. 오스트리아는 **2013년에 개정된** 「연방헌법(B-VG)」 제11조 제8호에서 **연방의 소관 사항으로 '동물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녹색당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시민 발의를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통과된 동물보호법부터 연방헌법까지 동물보호를 국가목표에 포함**하게 되었다.

2. 「민법전(ABGB) WP285a조, 제1332a조

❍ **오스트리아는** 동물의 권리 향상을 위해 **세계 최초로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였다. 1988년 3월 10일 오스트리아 연방의회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 법률(Bundesgesetz vom 10. März 1988 über die Rechtstellung von Tieren)'을 의결하고, 「민법전(ABGB)」 제285a조와 제1332a조를 신설하여 이를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물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동물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법적 지위를 원칙적으로 물건과 다르게 규율**하였다(제285a조).
-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동물의 가치보다 큰 경우에도 피해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훼손된 물건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다른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제1332a조).

3. 「동물보호법(TSchG)」 제13조, 제23조, 제29조 제1항 등

❍ 2004년 제정된 **「동물보호법(TSchG)」은 총 4개 장, 4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율 대상에 따라 「동물보호특별시행령(TSch-SV)」, 「동물원시행령(ZooV)」, 「서커스시행령(TSch-ZirkusV)」 등 **각각의 시행령**을 두고 있다.

❍ 오스트리아의 「동물보호법(TSchG)」의 **적용 대상은 모든 동물**이다. 포유류는 물론이고 조류, 파충류와 곤충, 어업 외의 목적으로 기르는 어류(제3조 제4항 제3호) 등 모든 동물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동법에 따르면 모든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생명의 권리'와** 살아있는 동안 모든 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삶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제1조).

❍ **동물은 반드시** 그들의 유전형(Genotyps), 표현형(Phänotyps)과 동물의 복지를 침해하지 않도록 과학적으로 승인된 **사육원칙에 따라 사육**되어야 한다(제13조 제1항). **동물을 사육하는 자**는 충분한 공간, 활동의 자유, 토양 상태, 숙박과 사육시설의 구조장비, 기후, 특히 빛과 온도, 관리와 영양, 종에 따른 사회적 교류, 나이와 서열 등을 고려하여 사육해야 한다(제13조 제2항). 동물의 특징과 습성을 고려하여 **강압적으로 사육되지 않도록 한다**(제13조 제3항).

❍ 동물보호소, 동물위탁시설, 유기동물보호소 및 보호구역의 운영자는 동법 제23조에 따라, 행정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9조 제1항).

❍ 오스트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허가받은 동물위탁관리업체는 총 83개이다

❍ 허가는 담당 지역의 행정 당국(지구 행정·치안판사)에 신청해야 한다(제23조). 관할 기관은 연방노동·사회·보건·소비자보호부(BMASGK)와 연방지속가능성관광부(BMNT)이다.

표 1 오스트리아 「동물보호법(TSchG)」 상 의무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17]

조항	허가가 필요한 경우
제26조 제1항	동물원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
제27조 제3항	사육하는 동물의 수를 늘리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등 서커스, 버라이어티쇼(Varietés)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유지하고 동물을 참여시키는 행위
제28조 제1항	기타 행사에서의 동물의 사용
제29조 제1항	동물보호소, 유기동물보호소 또는 동물위탁시설과 같은 영업행위
제31조 제1항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동물을 키우는 경우
제31a조 제3항	반려동물을 오스트리아에서 키우지 않고 외국으로 내보내거나, 외국에서 오스트리아로 반려동물을 들여오는 경우
제32조 제5항	도살 행위(Schächten)

❍ 동법을 위반하여 **동물에게 고통과 공포를 주는 행위(제5조), 동물을 죽이거나(제6조),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제7조), 특정 동물을 구매하거나 수입하는 행위(제8조)**에는 최대 7,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시에는 최대 1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제38조제1항). 심각한 동물 학대의 경우 최소 2,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제38조제2항).

❍ 그 밖에 동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행정위반에 해당하여 최대 3,7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7,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제38조제3항).

4. 「동물보특별시행령(TSch-SV)」 제20～제23조

❍ 오스트리아는 「동물보호법(TSchG)」의 시행을 위해 다수의 시행령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 「동물보호특별시행령(TSch-SV)」은 동물보호소(Tierheim), 동물위탁관리시설(Tierpension), 그 밖에 상업적 또는 기타 경제활동(「동물보호법(TSchG)」 제31조 제1항)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동물보호소, 동물위탁관리시설 등의 시설 요건(제20조)

1. 반려견, 반려묘, 기타 동물을 위한 공간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2. 아픈 동물들은 따로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적절한 방식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3. 다른 동물과 함께 있기 어려운 동물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적합한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동물위탁관리시설의 운영 요건(제21조)

1. 동물이 머무는 공간은 청결하게 유지되고 청소와 소독이 용이해야 한다.
2.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다른 동물과 어울릴 수 있는 동물만 같은 무리에 있도록 해야 한다.
3. 반려동물위탁자격증(Heimtierausweis)과 예방접종증명서가 있는 자만이 동물을 관리할 수 있다.
4. 아프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동물은 즉시 격리되고 수의사로부터 진료받도록 해야 한다.
5. 위탁시설에 머무는 동물들은 정기적으로 수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 동물위탁관리시설의 인력 구성(자격 요건)(제22조)

1. 개체수와 동물 종류에 따라 충분한 수의 전문가와 조수가 동물을 돌보도록 해야 한다.
2. 동물학과 및 수의학 관련 학사와 농업기술학교 교육을 받은 자 등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 최소 2인 이상의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 **동물위탁관리시설의 운영자**는 동물보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기록일지를 비치**해야 하며, 기록을 위해 직원을 두도록 한다. 이는 **전산으로도 기록**할 수 있다(제23조).

□ 시사점

❍ **2023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비율이 2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동물의 정의:

- **우리 민법**에서는 동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동물을 물건(제98조)으로 보고** 있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고 특별한 보호 입법의 가능성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다.
- **오스트리아 「민법전(ABGB)」은** 이미 지난 1988년 우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사항은 물론이고(제285a조), 나아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다른 특칙**을 규정(제1332a조)하여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동물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민법 개정 논의를 할 때 이와 같은 오스트리아의 규율은 참고가 될 것이다.

❍ 등록제와 허가제:

-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위탁시설업을 **'등록제'로 규정**하고, 그 시설과 인력 등 등록을 위한 기준 일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3조).
- **오스트리아 「동물보호법(TschG)」은** 동물위탁시설업을 등록제보다 강화된 **허가제로 규정**하고(제23조), 시설과 인력 등 등록을 위한 **중요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제29조). 동물위탁관리가 보호자 없이 행해지는 점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규율은 참고가 될 것이다.

❍ 동물사육 원칙:

-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규율에 있어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 **소유자의 개별적인 행위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 **오스트리아 「동물보호법(TschG)」은** 동물의 생명의 권리를 규정하고(제1조), 동물의 복지를 침해하지 않는 과학적 사육원칙에 따라 사육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며 그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제13조 등). 동물위탁관리가 과학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의 법제 정비를 할 때, 이와 같은 오스트리아의 규율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 오스트리아와 우리나라의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 2 오스트리아와 우리나라의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법률 비교

구분	오스트리아	우리나라	시사점
헌법상 동물보호	「연방헌법」 제11조 동물보호를 연방소관으로 함	(관련 내용 없음)	동물보호를 헌법에 명시
동물 정의	「민법전(ABGB)」 제285a조 동물은 물건이 아님(1988년 세계 최초)	(별도 규정 없음)	동물의 정의를 민법에 둠
	「민법전(ABGB)」 제1332a조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에 대해 특칙을 규정	「민법」 제98조 동물을 물건에 포섭하여 이해하고 있음 ※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개정안 계류중	동물을 물건보다 상위의 가치로 둠
제정연도	2004년 동물보호법 제정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
적용대상	모든 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곤충, 어류, 양서류, 두족류 등)	척추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
관할부서	연방노동·사회·보건·소비자보호부 + 연방지속가능성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
허가 vs. 등록	「동물보호법(TSchG)」 제29조(허가) 1. 정기적인 수의학적 관리 보장 2. 최소 1인 이상 전문가의 상시 관리 3. 일지를 기록해야 하며, 이를 3년간 보관하고 요청 시에 당국에 제출	「동물보호법」 제33조(등록) 동물위탁시설 영업의 등록은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함	요건의 강화 (허가제 도입 여부)

표 2 오스트리아와 우리나라의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법률 비교

구분		오스트리아	우리나라	시사점
동물 사육 원칙	생명권	「동물보호법(TSchG)」 제1조 동물 생명의 권리를 보장함	「동물보호법」 제1조 생명 존중을 명시함	동물의 생명권리로 이해
	일반 원칙	「동물보호법(TSchG)」 제13조 동물 사육의 과학적 원칙을 제시	「동물보호법」 제3조 본래의 습성과 신체 원형을 유지하며 살고 고통과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사육해야 함	사육원칙의 과학화
의무사항		「동물보호특별시행령(TSch-SV)」 제20조(제반시설): - 반려견, 반려묘, 동물 분리 의무 아픈 동물들은 따로 돌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제21조(운영조건): - 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동물을 관리함 - 질병 의심 동물은 수의사로부터 진료 - 일정한 간격으로 수의사 검진 제22조(인력구성): - 개체수와 동물 종류에 따른 충분한 수의 전문가와 조수 고용 - 동물학사 등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최소 2인 이상의 인력 고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바. 동물위탁업자의 의무사항: 1. 운동시킬 의무 2. 적절한 사료나 간식 관리 3. 안전관리 의무 4. 건강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 의무 5. 체중 및 성향에 따른 구분 관리 6. 계약서 작성 의무 7. 관리자 상주 또는 수시 확인 의무	- 동물위탁시설에 최소 1인 이상의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상주 - 자격요건을 가진 자만이 상주 관리자가 될 수 있음
벌칙		「동물보호법(TSchG)」 제38조 관련 행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750유로의 벌금,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7,500유로의 벌금 부과	「동물보호법」 제97조제3항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범에 대한 처벌 강화

관련 자료

- 김복택, 한권으로 정리하는 동물보호법, 박영스토리, 2022
- 송호영, 동물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법학논집 제39권 제1호(2022년 3월)
- Regina Binder, Das österreichische Tierschutzrecht, MANZ Verlag Wien, 2019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 공공정책 정보

※ 공공정책 정보는 이 달의 주요 정책정보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메일로(메일링서비스) 보내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4월 첫째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행정안전	○ 전북자치도 주력산업 디지털 대전환 여건분석 및 대응 방향 연구
	보건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주요 개편방안 효과 분석 ○ 전자비자 제도가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흉터 평가 AI 시스템 글로벌 시장 동향 ○ 의료 디지털 성숙도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필요성 검토 ○ MASH 치료제 개발과 글로벌 시장 분석
	정무, 행정안전	○ 한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와 경기도의 대응방안
	환경노동, 행정안전	○ 경기도 자연환경복원 추진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제고 방안 연구 ○ 탄소중립이 경기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휴머노이드 로봇 2025 : 기술, 산업, 미래 전망 ○ 중국의 인공지능(AI) 정책·전략 현황과 변화 방향
	국토교통	○ 도로 산업 육성 및 국가간선도로망 발전 방향 연구 ○ 경기도 노인보호구역 확대 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 EU 옴니버스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한한령 해제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전략
	외교통일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대미정책 ○ 지정학적으로 융합되는 인도-태평양과 유라시아 ○ 한-이집트 수교 30주년 :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주관 G20 외교장관 회의 의미와 시사점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4월 첫째주	외교통일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관계 평가와 쟁점 ○(2025년) 북러 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만문제' 접근과 전략적 함의 ○북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통제의 딜레마 ○시리아 재건의 안보적 함의와 한국의 기대 역할
	행정안전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피해자 권리 중심' 재난지원 패러다임 적용해야! ○사회적 요인에 따른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자녀관 형성 연구 ○인구감소시대,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 정책의 방향성 제고
	문화체육관광	○공연관광이 지역 관광산업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법제사법	○AI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방	○남중국해의 현저한 해양 안보 도전과 전쟁의 안개
4월 둘째주	행정안전	○지역상권 지원정책 개선 방향 연구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과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 연구 ○OECD 지표를 활용한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 연구 ○"30분 농촌생활권" 지방소멸 막는 모빌리티 전략 ○데이터로 이민자 들여다보기 : 정주 이민자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간병국가책임제를 향한 정책 전망과 과제 ○인공지능(AI) 입법에 따른 사회보장 분야 현황 및 시사점 ○바이오헬스란 무엇인가 : 등장배경, 정의 및 산업적 범위 ○인구 고령화에 따른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제도화 방향 ○사회보장 재정 배분의 장기적 변화 특성과 개선 방향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성과 향상을 고려한 사회보험의 정책방향 모색 ○광역자치단체 복지행정의 조직 체계 및 인력 운영 진단 연구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AI 구성 요소와 최근 이슈 ○특허지표를 활용한 주요국 AI 기술 경쟁력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동향 : 2025 플렉세라 보고서 분석 ○딥시크(DeepSeek)의 등장과 인공지능(AI) 보안 이슈 ○글로벌 AI 패권 경쟁 : 중국 동향과 시사점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4월 둘째주	문화체육관광	○ 크루즈노믹스(Cruisenomics)를 위한 제주지역의 향후 과제 ○ 영국 디지털 트렌드 및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일반적 선호 ○ 영국 창조산업의 AI에 대한 인식, 영향 및 기회
	국방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년과 한반도 안보에의 함의 ○ 발트해 해저케이블 절단 사태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친환경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에 기반한 전남 친환경 농업 발전 방안 ○ 전남의 지속가능한 어촌개발 방향 연구 ○ 애그테크로 싹 틔우는 식량 안보
	국토교통	○ 고령자 친화적인 15분 생활권내 교통안전 확보방안 ○ 신도시 계획기준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정무	○ 미국의 녹색 금융 활동과 부산의 정책 시사점 ○2025년 자금흐름, 증권 및 자산운용시장으로
	외교통일	○ (2025년) 한국의 대(對)중동정책 제언 ○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정책 및 시사점 ○ 트럼프 2기 정부의 對중앙아메리카 정책 방향과 시사점 ○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대만인 인식과 그 함의 ○ 탈북민의 북한송금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과제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해외원조 중단이 국제개발협력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환경노동	○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경기도 근로자의 인식 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EU 청정산업계획 및 기업 지원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평가 ○2025 중국 양회(兩會), 산업정책 키워드는 AI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술통상 정책 전망과 시사점
	교육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교육 통계 현황과 개선방안 ○ 이주배경 직업계 고등학생 취업 연계를 위한 정책적 제안 ○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교권 현황과 개선 과제 ○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학생평가 패러다임 전환 ○ 이중차분모형 및 삼중차분모형을 활용한 마이스터고 교육의 고용 효과성 분석
4월 셋째주	행정안전	○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전북투자청 설립방안 ○ 저출생·고령화사회 대응 대전시 생활권 공원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영향 및 경기도 대응 방안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4월 셋째주	외교통일	○(2025) 중국 양회 결과와 미중관계 전망 ○풀어쓴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중국의 대내외 정책 변화 고찰 : 2025년 양회(兩會)를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외 정책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김정은 정권 사상 강조의 배경과 정치적 목적 ○미국이 핵무장론 확산을 이유로 한국을 '민감국가'에 지명했을까? ○미·러·우 휴전 협상의 역학과 유럽의 대응 ○미국 VOA 및 RFA 방송 중단의 함의와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분석(2024년 ○한국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트럼프 2기의 관세전략 : 미국 단독주의(America Alone)와 경제안보적 함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행정안전	○전남 김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정책연구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해외 미디어 동향. 2025-1호, AI 플랫폼과 언론사의 제휴 동향 ○중국의 딥시크 AI 기술 국가 기밀 지정 의미와 시사점
	환경노동	○탈탄소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4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 ○경기도 고령 노동시장 정책 발전방안 연구
	기획재정	○국가 거버넌스와 국가 간 인구 이 ○랩 방식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역량개발 훈련의 혁신 모델 연구
	국방	○12.3 비상계엄과 한국 민군 관계의 과제 ○대만, 해저 케이블을 위협하는 선박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다 ○미국의 글로벌 군사력 운용 전망과 K-방산의 시사점
	문화체육관광	○(2024) 한국 영화산업 주요 쟁점 연구
	국토교통, 행정안전	○전라남도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교육감이 학교의 장을 통해 학생의 교복을 지원할 때 현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에 상응하는 바우처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견25-0044, 2025. 3. 25.)

□ 질의요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장을 통해 학생의 교복을 지원할 때 현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에게 교복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 외에 **교복 구입비에 상응하는 바우처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 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이하 “강원도교육청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의 장을 통해 학생의 교복을 지원할 때 현물로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현물 지급 방식 외에 교복 구입비에 상응하는 **바우처카드를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교복 지원 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교육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점**에서 교복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예산편성권한 또는 예산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교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에 적합한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고, 강원도교육청조례에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현물 방식으로만 교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교육감이 특정 방법으로만 교복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권한이나 의무가 조례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교복 지원 사업의 집행 수단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은 해당 사업에 관한 **교육감의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북도, 의견25-0059 2025. 3. 20.)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재산을 매입·매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률의 위임 없이 출자·출연기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살펴 보면,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제15조의3),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성립·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며(제18조

제3항),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한 사업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제25조제1항),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제26조제1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이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관리·감독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제2호) 및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제3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2024 사업연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 기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 재산을 매입·매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방출자출연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이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출자·출연기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제3조제2항),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출자·출연기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다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Ⅵ. 법령 해석 사례

Ⅵ. 법령 해석 사례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시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주체는? 【법제처 25-0172, 2025. 4. 7., 민원인】

□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같은 영 제35조의5제1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나목에서는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의 편성(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함)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을 규정하면서,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시·도지사(제2호다목)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의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소속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소속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u>**시장·군수 등 소속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u>

□ 이유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 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에서는 각 호로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을 규정하면서,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시·도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인 사업을(제1호가목),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사업**을(제1호

나목)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시장·군수등**이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는 사업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35조의5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되어,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행사성 사업 등을 유치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사업의 주체가 시장·군수등인 경우에는 그 행사성 사업 등의 유치에 따른 해당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등 소속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서는 '투자심사'에 대해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미리 투자심사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를 사업의 유형 및 총사업비 등을 기준으로 구별하여 정하면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중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시장·군수등(제1호마목)이,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시·도지사(제2호다목)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제3호다목)이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행사성 사업의 총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심사 주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에서 총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정하고 있고, 총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심사 주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과 같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이므로 시·도 지사가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재정투자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장·군수등이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시장·군수등 소속 지방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방재정영향평가와 투자심사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행사성 사업의 경우 해당 시·군 및 자치구가 아닌 시·도에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의 사전 절차인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도 투자심사와

동일하게 시·도지사 소속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는 그 심사 대상, 실시 시기, 심사 기준 등이 상이한 별개의 제도**로서, 행사성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투자심사의 심사 주체 기준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심사하는 소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등 소속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 략)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생 략)

② ~ ⑥ (생 략)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

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①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
 가. 시·도: 30억원
 나. 시·군 및 자치구: 10억원
2. (생 략)

② (생 략)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생 략)

②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나. (생 략)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 바. (생 략)
3. (생 략)

③ ~ ⑤ (생 략)

2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는?

【민원인 25-0091, 2025. 3. 28.】

□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이하 "용도지역·지구"라 함)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에 착수**하였으나,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용도지역·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된 후에 공장의 설립을 완료**하여 가동 중인 공장의 업종을, 설립 당시 승인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업종변경이 같은 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업종변경은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는 공장의 업종, 첨단업종 해당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산업집적법령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산업집적법 제13조의3** 제2항 전단에서는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과 직접 관련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행위는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자가 공장설립등을 위한 승인을 받을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행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산업집적법 제13조의3 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공장설립등의 신청서에 기재되고 승인받은 내용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종변경은 같은 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특례 규정**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일반 규정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용도지역·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되어 같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당초 승인받은 내용대로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공장의 경우,**

재차 해당 특례를 적용하여 당초 승인받지 않은 업종변경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특례의 적용 범위를 명시적인 근거규정 없이 확대해석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업종변경은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